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02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박정하 · 김대식 · 안철수
김은혜 · 우재준 · 조은희
김형동 · 백종현 · 진종오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체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사업과 같은 공익 목적의 법인은 지역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과 국민의 건강 증진, 문화 향유권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시설 취득·유지 과정에서 취득세·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투자와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 ----- ----- ----- ----- ----- <u>2029</u>
1. ~ 5. (생략)	<u>년 12월 31일</u> ----- 1. ~ 5. (현행과 같음)